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 공개 및 국회 보고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29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수활동비 등 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작성·공개 및 국회 보고(안 제44조의2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8.

다. 회 부 일 :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

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정의 및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 공개 및 국회 제출(안 제4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특수활동비의 관리 등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을 참고하여 <u>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u>하여야 함 · 특수활동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특정업무경비: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 -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한 <u>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u> · 위원 2/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특수활동비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부집행지침,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의 경우 비공개 가능. 단, 재판·범죄수사 등과 관련된 비공개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공개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정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세부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계획과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포함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

성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집행지침·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지침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되며, 주로 정보·수사활동 소요 경비, 국가기밀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업무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정의되며,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하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2018년) 집행범위·절차, 증빙방법 등을 규정한 부처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수립 의무화

(2021년)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2024년)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제한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월 말까지 통보하고,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들

한편, 2025년도 예산(추경포함)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전년 대비 12% 감액된 1,08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0.7% 증액된 9,121억 4,8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총 1조원이 넘는 규모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되었음.

[2025년도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2025예산	기관	2025예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12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22
대통령경호처	8,2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1
국회	980	국세청	2,712
감사원	759	관세청	1,253
법무부(검찰청)	4,004	경찰청	71,3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8	해양경찰청	11,237
외교부	521	계(14개 기관)	108,281
통일부	1,992		

※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중앙관서별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2025예산	기관	2025예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6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18
대통령경호처	2,858	국가인권위원회	395
국회	18,536	국가교육위원회	7
대법원	19,697	방송통신위원회	107
헌법재판소	800	공정거래위원회	1,194

을 규정하고 있음.

기관	2025예산	기관	2025예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66	금융위원회	25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5	국민권익위원회	543
감사원	4,556	원자력안전위원회	7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8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6
기획재정부	1,750	국세청	50,640
교육부	65	관세청	13,5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8	조달청	1,070
외교부	16	통계청	3,712
통일부	18	우주항공청	40
법무부	59,325	재외동포청	7
국방부	5,900	병무청	91
행정안전부	715	방위사업청	167
국가보훈부	19	경찰청	648,113
문화체육관광부	92	소방청	2,651
농림축산식품부	1,511	국가유산청	24
산업통상자원부	72	농촌진흥청	26
보건복지부	53	산림청	372
환경부	190	특허청	261
고용노동부	9,877	질병관리청	17
여성가족부	60	기상청	19
국토교통부	4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	10
해양수산부	270	새만금개발청	14
중소벤처기업부	26	해양경찰청	57,170
인사혁신처	7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200
법제처	10	합 계 (60개 기관)	912,148
식품의약품안전처	387		

※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라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
보고서가 국회에 보고되고 공개됨으로써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국회
와 국민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규정된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고 집행증빙서류를 생략⁴⁾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적 집행과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는 비목 중 일부인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목의 구분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 조문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법체계 상 부절적하다는 의견임.

4)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제3조(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고, 이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⁵⁾에 따르면, 체계정당성이란 법령체계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규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체계정합성의 원칙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근거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음.

개정안과 같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다른 비목과 다르게 법률로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부전문가가 집행지침을 심의하고,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5) 전원재판소 2002헌바66, 2004.11.25.

6) 기획재정부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은 그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사·감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외부 공개시, 피의자 추적 및 검거, 사건관계인의 보호 등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집행내역 등의 대외공개는 특수활동비 등의 운영 본질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대법원 판례도 특수활동비 등의 기밀성을 인정하여 일시·금액 등 일부정보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비공개 범위를 넓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임.

<특활비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별 공개범위>

구분	액수	일자	수령인	지급사유
국회('18.6)	○	○	○	X
대검('23.4)	○	○	X	X

또한, 특활비등심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국정관련 특활비 집행관련 사항은 외부에 공개가 불가능한 비밀활동, 정보원 개인정보, 수사계획 등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외교·안보·경호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안 제4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포함된 집행결과 보고서가 국회에 보고되고 민간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필수적인 통상의 수사·정보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역 공개보다는 집행 절차, 사후 감사 등에 대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44조의2제5항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에 따른 비공

개되어 외부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수사 등에 관한 자료는 수사정보·기법 누출 등으로 수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후적으로라도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령령을 통해 수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①</u> <u>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u> <u>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u> <u>호의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u> <u>마련하여야 한다.</u> <u>1.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u> <u>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u> <u>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u> <u>직접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u> <u>동비”라 한다)</u> <u>2.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u> <u>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u> <u>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u> <u>경비(이하 “특정업무경비”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을 심</u> <u>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u> <u>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u> <u>둔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u> <u>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u> <u>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u> <u>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u> <u>다.</u> <u>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u> <u>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특수활동비</u> <u>및 특정업무경비(이하 “특수활동비</u> <u>등”이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u> <u>야 하며 해당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u> <u>2월 말일까지 집행결과보고서를 작</u>

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결과보고서에는 특수활동비등의 집행내역 및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세부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51

12. 특수활동비(230목)

1. 적용대상

-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
-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등 준수 여부 사전점검 실시(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집행결과보고서·집행내용확인서 작성 등)
- ☐ '25년에 기 계상된 특수활동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 ☐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 특수활동비 중 수사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여 요구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 적용대상

-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다만,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소요는 반영하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 ☐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 개인활동비는 인원, 단가, 기간을 곱하여 산출
 - 개인활동비 = 인원 × 단가 × 기간(월)
 - 부서활동비는 단순 총액계상이 아닌 특정업무 및 조직(국·과 등)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금지
- ☐ 업무추진비 또는 축·조의금(기타운영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 새로운 항목의 특정업무경비 신설 및 단가의 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3. 특수활동비(230목)

3-1. 적용범위

-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집행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는 주기적(연 1회이상)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밀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별첨>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 '19.7.31.개정, '19.7.31.시행)」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는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집행실태 점검결과 환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별첨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시행 2019.7.31.][지침 제37호, 2019.7.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계산증명규칙 제27조제2호에 따른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특수활동비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구비한다.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구비한다.

제3조(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고, 이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직무수행경비(250목)

5-3.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 특정업무경비는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기타 운영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 수사·조사·감사·예산 업무 등 수행을 위한 비공개 회의,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비공식 간담회 등 대외 비공개가 바람직한 사항 제외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근무하는 자도 파견근거가 명확하고 특정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방호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무직(단,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예시: 직제상 특정업무수행부서 소속임에도 특정업무 미수행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이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이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 내용이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